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4. 9. 3(화) 10:00

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자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소관)



복지건설위원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589호
- 나. 제 출 자 : 엄셋별 의원, 이인식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4. 8. 22.
- 라. 회부일자 : 2024. 8. 22.

2. 제안이유

의사상자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, 희생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, 공영주차장,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의 이용 요금 감면 조항 신설
(안 제4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)
- 나.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조항 신설
(안 제4조제2항제6호)
- 다.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(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2024. 8. 30.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예우를 위해 금천구 관련 시설의 이용요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의원 발의되었음

나. 주요 내용

- 1)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치·관리하는 체육시설, 공영주차장,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의 이용 요금 감면 조항 신설
(안 제4조제2항제3호, 제4호 및 제5호)
- 2)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·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조항 신설
(안 제4조제2항제6호)
- 3)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(안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호)

다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안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관계법령
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4. 7. 24.] [법률 제20106호, 2024. 1. 23., 일부개정]

제16조(보호기관)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·의료급여·교육보호·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행한다.